

제 22 장 행정 및 최종조항

제 22.1 조 협정이행의 검토

1. 이 협정의 다른 협의조항에 추가하여, 양 당사국의 무역교섭 담당 장관 또는 그들이 지정한 공무원은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, 그 이후에는 매년 또는 달리 적절한 때에 회합한다.
2. 제1항에 따라, 양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.
 - 가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작업단의 작업을 포함하여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적용의 검토
 - 나. 다음을 위하여 특별 또는 상설 위원회, 작업단 또는 전문가단의 설립 및 책임의 위임
 - (1) 특정 사안에 관한 임무 할당
 - (2) 이 협정의 어떠한 부분의 이행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연구 및 양 당사국의 무역교섭 담당 장관에 대한 권고, 또는
 - (3)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, 이 협정에 의하여 이미 다루어 지지 아니한 새로운 문제의 검토
 - 다. 확립된 원산지 규정의 수정. 이러한 수정은 제22.4조에 따라 발효한다. 그리고
 - 라.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의 검토

제 22.2 조 접촉선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.
2. 이 협정의 목적상, 당사국에 의하거나 당사국에 대한 모든 의사소통 또는 통보는 자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.

3. 이 조의 목적상, 양 당사국의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대한민국에 대하여는,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정국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 - 나. 싱가포르에 대하여는, 통상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

제 22.3 조 부속서 및 부록

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 22.4 조 개정

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에 합의할 수 있다.
2. 이렇게 합의된 때에는, 제1항에 따른 그러한 수정 또는 추가는, 양 당사국이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 간에 합의된 날에 발효되고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 22.5 조 발효

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.

제 22.6 조 종료

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으며,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부터 6월 후에 발효한다.

제 22.7 조

정 본

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. 차이가 있는 경우에
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
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05년 8월 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

외교통상부장관

통상산업부장관

반 기 문

림 흥 경